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

세부사업명	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						세드	<u> </u>	민간	경상보조
내역사업명	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						예신 (백만	_		17,679
사업목적	○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농업인 학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·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(대학장학금) - 영농후계 :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(1학년2학기~2학년 재학생, 전문대 제외) 중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,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- 농업인자녀 : 소득수준,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- 청년창업농육성 :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(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, 만 40세미만) 중 농업활동 실적, 취창업계획서,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(고교장학금) : 자영농고, 마이스터고, 일반농고의 농업계열 학과 재학생									
지원한도	ㅇ대학장학금: (농업인자녀) 50~200만원/학기, (영농후계) 250만원/학기, (청년창업농육성) 등록금전액+학업장려금200만원/학기 *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ㅇ고교장학금: 50만원/연	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100%	지방비		융;	자		자	부담	
									(단위	: 백만원)
연도별	구 분)17년	2018년	201		2019년		2020년	
재정투입 현황	합 계		3,700	13,090	13,995		17,679			
1 28	_ 국 고	13	3,700	13,090	13,995		17,679			
담당기관			담당과			담당자			연락처	
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			농촌사회복지과 장학팀			이한병 박순용		_	044-201-1578 02-509-2244	
신청시기	1학기(1월), 2학기(7월)					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				
관련자료	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, 사업시행지침서		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, 농업인 자녀,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, 비농대 재학생
 - *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53조(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)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), 제23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), 제24조(농업·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대학장학금

구 분	지원 대상					
농업인자녀 장학금	농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,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					
영농후계 장학금	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(1학년 2학기~2학년 재학생, 전문대 제외) 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					
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	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(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)중 졸업후 농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, 농업활동실적, 취· 창업계획서,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					

○ 고교장학금

구 분	지원 대상							
영농후계 장학금	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,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							

※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(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)

3. 대상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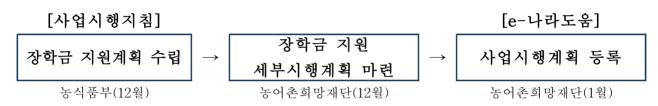
- 대학장학금 : 신청·접수(학생→재단) → 자격요건확인 및 추천(대학) → 심사· 선정(농림축산식품부(농어촌희망재단))
- 고교장학금 : 선발·추천(학교→재단) → 심사·선정(농림축산식품부(농어촌희 망재단)
- ※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(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)

4. 지원대상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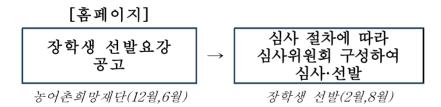
- 대학장학금: (농업인자녀) 50~200만원/학기, (영농후계) 250만원/학기, (청년창업농육성)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00만원/학기
 - *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- 고교장학금: 50만원/연
- 5. 지원조건 : 정액지원

Ⅱ / 사업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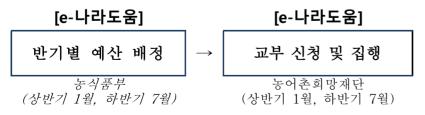
1. 사업계획 수립 단계



2. 지원대상자 선정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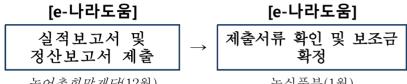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**(농림축산식품부)** 반기별 예산 배정(상반기 1월, 하반기 6월)
- **(농어촌희망재단)** 사업비 신청 및 집행
-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

- 장학금은 각 학교로 지급하며,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또는 해당학생 직접입금 후 지급정산함
-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,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
-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농식품부 통보(사본 첨부)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*농어촌희망재단*(12월)
- 농식품부(1월)
- (농림축산식품부)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여금 장학금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~2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
- (**농어촌희망재단**) 매 학기 장학금 신청·지원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장학생 및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(필요시 농식품부 합동)
- 장학금 부당수혜자 적발시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의거 해당학기 장 학금을 회수하고, 신청자격을 제한
- 장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

평가 및 환류 Ш

1.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
○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식품부로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

2. 평가

○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(사업 지침 작성시) 반영